

의안번호	제 98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21일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영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발 의 자 : 임영은, 박우양, 박문희, 이상식,
이상정, 하유정, 이의영

1. 제안 이유

-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지원 시설 확충시 예산지원 규정 마련(안 제12조)
-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목표 수립과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포상(안 제20조, 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입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중 “행정부지사” 를 “정무부지사” 로 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6장 보칙과 제20조 및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기업지원 성과관리) ① 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과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가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6장 보칙</u></p> <p><u>제20조(기업지원 성과관리) ①</u> <u>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과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p>
<p><u><신설></u></p>	<p><u>제21조(포상금의 지급) ①</u> <u>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가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u></p>
<p><u>제20조(규칙) (생략)</u></p>	<p><u>제22조(규칙) (현행과 같음)</u></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타시도 이전 및 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행정지원, 규제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군평가로 행정력 강화와 적극적인 시군 참여 유도

2. 비용 발생 요인

- 기업활동 촉진 및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시군 성과관리 평가로 우수 시·군 포상금 지급을 위한 비용 발생 예상

3. 관련조문

- 안 제20조(기업지원 성과관리)①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과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성과목표 관리 우수 시·군 포상사업비
- 나. 추계의 전제 : 우수 3개시·군 포상사업비 지원 100,000천원
- 다. 추 계 결 과 : 100백만원(최우수 50백만원, 우수 30백만원, 장려 20백만원)
- 라. 재원조달방안 : 2019년 본예산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포상사업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이선호(☎220-3210)